

	2021학년도 가정통신문 코로나19 관련 지필평가 운영 및 결시생 성적처리 안내	전	교무실	031-821-3236
		화	행정실	031-821-3235
주 소	우) 1208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68번길 47 (http://www.cheonghak.hs.kr)			

안녕하십니까?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을 기원합니다.
 우리학교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학생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지필평가 운영시간을 오전(2,3학년)과 오후(1학년)으로 나누어 진행하며, 중식시간을 11:30~13:10까지 2회 운영하여 학생들이 밀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2021학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상황별 결시생 성적처리에 대해 안내 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상황별 지필평가 결시생 성적처리 안내

1)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출결처리 및 증빙서류

대상	등교 중지 기간	출결증빙 자료(평상시)	출결증빙 자료(지필평가 시)
확진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원치료통지서* *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을 시행규칙[별지 제 22호 서식] 	
격리 통지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격리통지서 	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*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<유의사항> - 다만,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, 학생은 등교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	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	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문자 통지 사본 등) 	
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(임상 증상 발현 학생) ※ 임상증상 발현 시 '유 초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(제3판)'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·문의(해당 지침 5, 9, 40페이지 참고)	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(호전) 시까지 ※ 참고사항 ▶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 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(방역지침 40쪽 참고)	[코로나19 검사 결과 '음성'인 경우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(발급 가능 시), 문자 통지 사본 등) [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또는 자가진단 실시 결과,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발급 가능 시 권장) 	[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시 100%인정점 부여 증빙서류: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,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제출) 학교홈페이지-학생용 서식함 '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출력사용 가능(발급기관 미발급시 대비)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

- 기타 미등교 학생(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는 학생)의 경우 일반교실에서 평가 참여하거나 별도시험실 운영함. 기타 결석에 준하여 80% 인정점 부여하며 증빙서류는 학부모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.
- 기타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에서 결정하며, 성적처리는 학업성적관리규정 제5장 14조에 결시생 성적처리에 따름
- 지필평가 시험기간 및 이의 신청 기간 중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
- 질병결석인 경우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5장 14조 2항 증빙서류에 담임의견서 추가 제출

2021. 4. 23.

청 학 고 등 학 교 장